공직선거법위반

[대전지방법원, 2006.9.13, 2006고합228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이정회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조용무외 4인

【주문】

】 에 대한 형을 벌금 1,500,000원으로, 에 대한 형을 벌금 700,000원으로 각 정한다.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0,000원씩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는 무죄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